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요/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중요사항 준수 안내

1. 관련: 전북교육 2025-128 「2025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2. ‘더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육성’ 을 위해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운동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 1)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 2)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대로 투명하게 집행(2025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79쪽 참고)

3) 불법찬조금 조성관련 처분기준

영역	비리내용	처분기준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의 각종비리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 및 감사관 결과 처분에 따름	- 학교 운동부 해체 - 감사 요청
	과반수 미만의 학부모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지도교사)가 이를 부당 수령한 경우	수사기관 및 감사관 결과 처분에 따름	- 감사 요청 - 3년간 재정삭감(훈련비 등)

나. 행정사항

- 1) 운동부 운영 학교는 관련내용을 운동부 학부모에게 안내
- 2) 학교장은 운동부 감독교사,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수신자 도내 학교운동부 운영 초중고등학교 학교장(182)

★장학사

체육교육담당

문예체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문예체건강과-10012 (2025. 5. 29.) 접수 한솔초등학교-6476 (2025. 5. 30.)

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효자동2가, / <https://www.jbe.go.kr>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화 063-239-3390 /전송 063-220-9414 / 비공개(6)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